

## I. 변경내용

### 가. 2023년 이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

구 분	현 행	변경된 사항
제1차 시험 합격자 수	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	<u>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</u>
제2차 시험 합격자 수	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트 범위	<u>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</u>

◎ 제1차 합격자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응시생이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, 제2차 합격자 수를 확대하여 면접의 기회를 넓혔습니다.

### 나. 2025년 이후 시행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변경사항

#### 1. 제1차 시험과목

직 렬	현 행	변경된 사항
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공통	1.헌법, 2.민법, 3.형법, 4.영어, 5.한국사	1.헌법(절대평가), 2.언어논리영역, <u>3.자료해석영역, 4.상황판단영역</u> , 5.영어, 6.한국사

◎ 공직적격성평가(PSAT)를 도입하여 제1차 시험에서는 법원사무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, 헌법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여 응시생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2. 제2차 시험과목

( ):배점비율

직 렬	현 행	변경된 사항
법원사무직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행정법 (20%)</li> <li>2. 민법 [친족·상속법 제외] (20%)</li> <li>3. 형법 (20%)</li> <li>4. 민사소송법 (20%)</li> <li>5. 형사소송법 (20%)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행정법 (10%)</li> <li>2. 민법 (30%)</li> <li>3. 형법 (20%)</li> <li>4. 민사소송법 (20%)</li> <li>5. 형사소송법 (20%)</li> </ol>
등기사무직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행정법 (20%)</li> <li>2. 민법 [친족·상속법 제외] (20%)</li> <li>3. 상법 [총론, 회사편] (20%)</li> <li>4. 민사소송법 (20%)</li> <li>5. 부동산등기법 (20%)</li> </ol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행정법 (10%)</li> <li>2. 민법 (30%)</li> <li>3. 상법 [총론, 회사편] (20%)</li> <li>4. 민사소송법 (20%)</li> <li>5. 부동산등기법 (20%)</li> </ol>

◎ 제2차 시험은 법원사무관에 필요한 실질적인 법학지식을 평가하도록 하고, 제1차 시험에서 민법이 폐지됨에 따라, 민법의 배점비율을 확대하고(30%) 친족·상속법을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.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『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』 홈페이지 참조 끝.